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청년고용 촉진 시책 근거 마련 〉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5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청년고용 촉진 시책 근거 마련	3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7일 주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으로 채용 방식과 노동시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기반 채용시스템, 자동화된 직무 수행, 데이터 중심의 인사 관리 방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구직자는 기존과는 다른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 취업 환경 전반에 새로운 적응 부담을 안게 되었음.

특히 AI 채용시스템의 경우 평가 기준과 작동 방식이 구직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디지털 역량에 따른 청년 간 취업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더불어 AI 기술 도입으로 인한 직무 변화와 자동화는 일부 청년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산업 구조를 전제로 한 청년 고용 정책에 머물러 있고, AI·디지털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청년 취업 문제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AI 시대에 적합한 청년고용 정책의 방향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에서의 청년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청년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청년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청년고용 촉진 시책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 직무”를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분야에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우선채용 노력, AI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 기준 마련, 직무전환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u>“인공지능·디지털 직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기술 등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발·운영·관리하는 직무를 말한다.</u>
<u><신설></u>	<u>제7조의2(인공지능·디지털분야 청년고용 촉진) ① 국가는 인</u>

<신 설>

공지능·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 채용 과정에서 청년에게 불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3(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년 직무전환 지원) ①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직무 변화 또는 고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년에 대하여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정부는 <u>제5조</u>부터 <u>제7조까지의 규정</u>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또는 지원에 관한 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공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분야별 고용계획 또는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u>② 국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u>제5조</u>부터 <u>제7조까지</u>, <u>제7조의2</u> 및 <u>제7조의3</u>----- ----- ----- -----. ----- -----.
--	--

나. 검토의견

최근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이 증가하면서 평가 기

준의 불투명성, 알고리즘 편향 가능성 등 공정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디지털 역량의 차이에 따라 청년 간 취업 기회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AI·디지털 직무를 법률로 정의하고 해당 분야 청년고용 촉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정책 대상의 명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우선채용 노력 규정과 기업 지원 근거, 직무전환 지원 등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특정 산업 또는 기술 분야를 법률상 정책 대상으로 명시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 직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해당 분야에 한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및 직무전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및 디지털 산업은 현재 노동시장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채용 방식·직무 구성·요구 역량 등에서 기존과 질적으로 다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입법적 의미가 있다고 봄.

특히 AI 채용의 공정성 문제나 디지털 역량 격차와 같은 쟁점은 다

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시급하게 대응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법률 차원에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면이 있음.

다만, 일반적으로 청년고용 정책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노동시장 전반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설계되며, 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구조의 재편 또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행법 역시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지원·공공부문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청년고용을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개념 범위 및 명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 직무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기술 등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발·운영·관리하는 직무”로 정의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 대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해당 개념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기술 등 광범위한 기술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들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보임¹⁾.

1) 개정안의 정의에 따르면,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전형적인 디지털 전문직뿐만 아니라, 경영·마케팅·인사 등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하는 직무, 제조·물류·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기반 기술을 운영·관리하는 인력까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음. 나아가 디지털기반 기술을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등도 해석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직무가 해당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정의 규정의 범위가 광범위할 경우 정책 대상이 사실상 전 산업으로 확장되어 기존 청년고용 정책과의 차별성이 불명확해질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 또는 분야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한 면도 있음.

따라서 정책 대상의 명확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일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제정 이래 청년고용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특정 산업·직무에 관계없이 규율하는 법률로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여타 산업(예: 뿌리 산업, 바이오 등)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인공지능기본법」 등에서 산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신설 시 중복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9